

등록번호	기획예산과-10223
등록일자	2015.8.12.
결재일자	2015.8.17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이은임	김영혜	권순우	박진석	황치영	08/17 최창식
협 조					

2016년도 사업예산(안) 편성계획



서울중구

기 획 재 정 국
기 획 예 산 과

목 차

- I. 재정 여건
- II. 예산편성 기본방향
- III. 사전절차 이행
- IV. 예산편성 운영기준
- V. 세부 추진일정
- VI. 소요예산
- VII. 행정사항



2016년도 사업예산(안) 편성계획

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2016년도 사업예산(안)을 편성코자 함.

I 재정여건

□ 세입여건

-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, 감면 축소 등으로 소폭 증가 예상되고, 등록면허세는 경기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나 전년수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, 지방세 전체 규모는 소폭 증가 예상
- 세외수입은 증가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전년수준 유지 전망
- 국·시비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지속 증가 예상되고, 서울시 조정교부금 자원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교부액 소폭 증가 전망

□ 세출여건

- 민선 6기 역점사업·공약사업과 명소사업 등의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 자원 소요
- 법정·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국·시비 보조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등의 구비 매칭비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예상
-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 안전 관련 행정수요와 가로정비, 청소차량 차고지 매입(인천 당하동 대체부지) 등에 따른 예산 증가 예상

□ 재정여건 총괄

재정여건 총괄

- 재산세 등 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 예상되나, 세출예산 수요는 여러 분야에 걸쳐 크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여건 매우 열악함
- 이에따라 세출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(예산효율화·절감 극대화)하고, 법정·의무적 경비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긴축 예산편성 불가피

Ⅱ 예산편성 기본방향

- 인건비와 기초연금 등에 대한 구비분담금 등 법정·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하되, 긴축 예산편성 기조 유지
- 민선 6기 효율적 구정 운영 수행을 위해 주요 역점사업(공약사업 포함)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택적·효율적 자원 배분
-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강화 ☞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등
-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평가 반영, 기존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,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반영

Ⅲ 2016년 주요 달라지는 내용

※ 세부내용 별첨 참조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반영
 -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의무화
 -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사고이월 시기 조정
 - 예산의 첨부서류 변경사항 적용
- 「세입예산 과목구분 및 설정」 개선
 - 기타수입에 ‘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’ 편성 근거 신설
- 「세출예산 사업별 분류」 기준 개선

-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·출연토록 규정
 - ※ 출자·출연을 하려면 사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.
- 재무활동으로 구조화되는 공사·공단에 대한 경상·자본 전출금을 실제 성질에 맞게 정책사업으로 분류
- 「세출예산 성질별 분류」 기준 개선
 - 무기계약직, 기간제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건비 편성기준 제시
 - 기타 예산편성 과목 설정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반영

IV 사전절차 이행

예산 관련 법령·조례 사전 제정	✓ 위원회 및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
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(지방재정법 제33조)	✓ 모든 세입·세출예산(예산안 부속서류) ✓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한해 예산편성
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(지방재정법 제37조)	✓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·타당성 사전검증 ✓ 총사업비 20억원이상 40억원 미만 신규사업 ✓ 총사업비 3억원 이상 공연·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✓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%이상 또는 20억이상 증가한 사업
지방보조금 예산편성 (지방재정법 제32조의2)	✓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✓ 보조금 과목별·사업별 규모,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, 보조사업 유형별 자원부담 기준 등에 대해 사전 심사
공유재산 관리계획 (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)	✓ 중요재산 취득·처분 10억원이상, 토지 1천㎡ 이상 취득, 2천㎡ 이상 처분 → 의회 승인 대상
출자·출연금 (지방재정법 제18조)	✓ 투자·출연기관에 대한 출자·출연금 편성시 사전 의회 동의 필요

V 예산편성 운영기준

1 세입예산 요구지침

세입예산 편성 관련 유의사항
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세입에 반영
-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없이 예산편성
- 최근 3년간 세입징수 실적을 토대로 증·감 현황, 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
- 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내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
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및 요구 : 세무1,2과, 주차관리과(특별회계)
-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 등 : 기획예산과
- 순세계잉여금 추계 및 요구 : 재무과
 - ※ 부서별 집행잔액, 통장 잔고(세입내역) 확인 등 사전 가결산 후 요구
- 국·시비 보조금 : 소관 사업부서
 - ※ 가내시 통보액을 기준으로 하되,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요구

2 세출예산 요구지침

세출예산 편성 관련 유의사항

- 전례답습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최근 3년간 산출내역별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, 집행 가능한 실제 예산만 요구 ※ 타당하고 명확한 산출근거 제시
- 낭비요인 제거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자발적인 절감 노력 강구
⇒ 모든 사업을 Zero-Base에서 재검토,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추진
-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한 기준경비, 자체적으로 정한 단가 등 준수

※ 중기지방재정계획(2016~2020), 기금운용계획, 성인지예산서, 명시이월 등은 별도 수립

□ 행정운영경비(인력운영비, 기본경비)

- 인력운영비는 불필요한 인력 감축 원칙 편성(기준인건비 범위 내)
- 기본경비는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사항 등은 제외하고 예산요구 최소화
 - ※ 각종 기준경비의 책정대상인 정원 및 장비의 정수는 2015. 10.1 기준으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』에서 명시한 비목별 기준단가 적용, 요구(일반운영비,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)

□ 정책사업비(투자사업 및 경상사업)

- 사업별 효과와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여 요구
 - 1순위 : 공약사업, 주요 시책사업, 계속사업, 매칭사업(법정부담)
 - ※ 공약사업, 명소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요구 철저
 - 2순위 : 자율편성 사업, 신규사업(구청장 방침 득한 후 편성 요구)
 - ※ 신규사업은 민선6기 필수사업,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사업에 한해 예산요구
- 투자사업은 예산요구시 공정별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해당년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
-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편성
 - 적용대상 :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, 사회복지사업보조, 민간자본사업보조
 -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, 포괄적·일반적 예산편성 금지
 -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
- 시책추진업무추진비, 소모성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규모 이하 요구 원칙
-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, 내역이 분명하지 않은 포괄성 예산편성 불가

□ 재무활동(내부거래, 보전지출 비용)

- 내부거래 : 기타회계전출금, 기금전출금 등
- 보전지출 : 반환금 기타, 예치금 등

3 성과계획서 작성

- 실·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운영의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통합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
- 1년 동안 추진해야 할 목표, 주요사업을 예산과 연계시켜 체계화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경영 측면이 강조된 성과관리 추진
 - 전략목표 설정 : 실국별 1개 정도
 - 정책사업 목표설정 : 1개의 정책사업 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
 - 단위사업 설정 :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
 - 성과지표 설정 : 측정가능(정량지표)하고,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,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설정

※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'성과계획서' 작성이 의무화되고, 2016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

VI 세부 추진일정

1 예산편성계획 시행

2015. 8.17 한

※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통보

책자 기배부
(전부서)

2 성과계획서 작성 및 예산요구서 제출 (부서⇒기획예산과) 2015. 9.18 한

- 예산편성 계획 수립 관련 회의 8.17 한
- 부서 세입예산 요구서 취합 (부서 ⇒ **세무 1,2과**) 9. 9 한
- 세입예산 요구 9.11 한
(**세무 1, 재무, 사회복지, 주차관리, 도심재생**⇒기획예산과)
- 성과계획서 작성 및 제출 (주무부서 ⇒ 기획예산과) 9.18 한
- 세출예산 요구 (부서 ⇒ 기획예산과) 9.18 한
- ※ **중기재정계획, 투자심사, 보조사업 성과평가** 등을 선행하여 예산편성 요구
-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(해당부서) 10.2 한

3	예산 심의 · 조정 및 예산안 확정	2015.11.12 한
	○ 세입 1차, 2차 확정	10. 8 한
	○ 예산안 조정 · 심의	10.31 한
	○ 예산안 1, 2차 보고	11. 6 한
	○ 예산안 작성(확정)	11.12 한
4	성과계획서, 증기지방재정계획, 성인지예산서 확정	2015.11.12 한
5	예산안 의회 제출	2015.11.20 한
	○ 구의원 사전설명 (의회 사전협의)	11.17 한
	○ 예산안 제출	11.20 한
6	예산안 의회 심의	11~12월
	○ 상임위 · 예결위 심사 (의회 운영일정에 따라 조정)	11.21~12.15
	○ 계수 조정	예정
7	예산안 의결 기한	2015.12.21 한
	○ 예산안 의결	회계연도 개시 10일전

VII 소요예산

예산액 : 22,000천원

산출근거

○ 예산서 : 40,000원 × 250부 = 10,000천원

○ 예산안 : 35,000원 × 100부 = 3,500천원

○ 사업설명서 : 50,000원 × 100부 = 5,000천원

○ 성과계획서 : 35,000원 × 100부 = 3,500천원

예산과목 : 기획예산과/재원의 합리적 배분/효율적인 재정관리/
예산운영관리/ 일반운영비/사무관리비

VIII 행정사항

□ 예산편성 요구서 및 부속서류 제출(국장 전결)

- ▶ **세입예산 요구 (세무1과 ⇒ 기획예산과) 2015.9.11한**
- 일반회계 세입부서 ⇒ 세무1,2과 통보 9. 9 한
 - 의료급여기금,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(사회복지과) 9.11 한
 - 주차장 특별회계(주차관리과) 총괄 편성 및 기반시설특별회계(도심재생과) 9.11 한
- ▶ **세출예산 요구 (부서 ⇒ 기획예산과) 2015.9.18 한**
- 재정계획(사업구조화) 수립 ⇒ e-호조시스템 입력
- 분야·부문 ⇒ 정책사업 ⇒ 단위사업 ⇒ 세부사업 설정
 - 중기지방재정계획, 성과계획 및 세출예산요구 전산입력 및 제출 9.18 한
- **세출예산요구서(출력물), 세부사업설명서(붙임 3), 사업비요구내역 우선순위(부서, 국별 별도 작성), 공문 제출**
 - 동주민센터 예산요구 : 자치행정과 9.11 한
 - 시설관리공단 예산요구 : 시설 주관부서 9.14 한
- ▶ **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2015.10.2 한**
- 목록 및 제출 부서 : 별첨 참조
- ▶ **예산심사 시 제출서류**
- 각 부서별 서울시에서 별도 시달된 2016년도 예산편성 기준
 - 소관사업 관련 조례·규칙·내부지침 등 관련 문서
 - 국·시비보조금 가내시 공문
 - 2016년 정수물품(405-01) 취득 승인내역 : 재무과
 -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- 단가 산출근거, 견적서, 가격표, 설계서 등

- 붙임 : 1. 2016년 예산편성 관련 주요경비
2.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사항
3. 각종 서식
4.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
5. 2016년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22호)
6.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)
7. 의무지출·재량지출 구분기준